의안번호	2204254
의 뢰 인	정성호 의원
회 답 일	2024.10.16.
추계번호	24C403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4조 (하급교육행정 기관의 설치 등)	(제1항)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다만,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다.	의무규정 (단서: 재량규정)
		(제2항)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의무규정
		(제3항)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그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교육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4조 (하급교육행정 기관의 설치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을 1개의 시·군·자치구별로 설치하도록 하되,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구역과 명칭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 전국 교육지원청 설치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1] 교육지원청 설치 현황

관할구역		교육지원청	대상 지역(시・군・자치구)(개)
단일 관할		139개	경기 19, 인천 2, 강원 16, 대구 2, 충북 9, 충남 13, 전북 14, 전남 22, 경북 22, 경남 18, 제주 2
복수 관할	2개	24개	서울 8, 경기 6, 인천 2, 대구 2,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 각 1
	3개	11개	서울 3, 부산 4,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
	4개	2개	인천 1, 부산 1
	소계	37개	* 수도권(54.1%): 20(서울11, 경기6, 인천3), 수도권 외(45.9%): 17(광역시14, 도3)
총계		176개	* 통합교육청의 비율 - 수도권 : 서울 100%(11/11), 경기 24%(6/25), 인천 60%(3/5) - 수도권 외 : 광역시 93.3%(14/15), 도 0.25%(3/120)

자료 :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2023.9)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던 통합교육지원청이 시·군·자치구별 교육지원청으로 분리·설립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신설될 교육지원청의 수 및 지역, 필요 예산규모 등에 대한 예상이 어려워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2024년 현재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 중 분리·신설될 지원청의 수와 이의 규모에 대한 추정이 필요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3447호)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2개의 교육지원청으로 분리·신설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로 5년간 838억 3,400만원이 추계된바 있음[1)]

○ 다만, 현시점에서 분리 신설될 교육지원청의 수나 지역, 신설·폐지될 교육지원청의 조직 및 인원수 등에 대한 예상이 어려움

- 분리·신설될 교육지원청은 관할구역의 인구, 지역특성 등에 따라 담당하게될 업무의 양, 조직 및 인력 규모 등이 달라질 것이며, 이에 소요예산 또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음

1) 부지매입비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포함시 추가재정소요는 증가할 수 있음

- 분리·신설될 교육지원청은 관할구역의 인구, 지역특성 등에 따라 담당하게될 업무의 양, 조직 및 인력 규모 등이 달라질 것이며, 이에 소요예산 또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은「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